

# 연봉조정위원회규정

제정: 2024.06.01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직원보수규정(이하 “보수규정” 이라 한다) 제3조 및 연봉제 교직원 연봉시행세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원대학교 교직원 연봉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원회의 기능 등)** ① 위원회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적용대상 교직원의 연봉 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(이하 “심의 등” 이라 한다)한다.

- 교직원 개인별 연봉 조정 금액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(재심의 포함) 및 조정
- 기타 연봉에 대한 심의사항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위원회는 연봉 조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함에 있어 관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대학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③ 위원회가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회의 참석 및 전문가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## 제2장 위원회의 구성

**제3조(위원회의 구성 등)**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교무처장, 사무처장, 교무팀장, 사무팀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연봉제 교직원 5인의 위원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4조(위원장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임기 등)**①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 개시일은 해당 위원회의 보직 임기개시일과 같다.

**제6조(위원의 자격상실)**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- ① 위원회 위원이었던 자가 교직원의 자격 또는 보직을 상실할 때
- ②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
- ③ 사임하였을 때

**제7조(위원의 의무)** 위원은 연봉조정과 관련된 정보의 비밀을 준수하며, 자료를 유출 또는 공개할 수 없다.

### 제3장 위원회의 운영

**제8조(회의개최 등)**① 회의는 심의 사항 발생시 회의를 개최한다.

- ② 모든 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하여야 하며,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회의를 개최 운영한다.
- ③ 회의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.

**제9조(의사 등의 정족수)**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0조(의결서 작성 등)** 위원회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내용과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출석 위원 전원 서명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위원들의 동의시 대표위원이 간서명 할수 있다.

**제11조(위원의 제척)**위원이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2조(심의 등 결과의 처리)**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대학은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.

**제13조(간사)**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## 제4장 위원회 규정의 개정

**제14조(규정 개정의 제안)**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2인 이상의 위원이나 위원장 또는 총장의 발의로 제안한다.

**제15조(개정안 공고)**제안된 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규정의 개정)**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의견을 확정하고, 대학은 관련 절차에 따라 규정 개정을 시행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② (준용)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내 제규정의 절차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.